

위험성평가 인정심사위원회 회의록

□ 기관명 : 경남동부지사

심사일시	2023. 12. 12. (화) (16회차)	심사방법	대면심사	
심사안건	▶ 인정심사대상 : 30개소 (인정 25개소, 인정취소 4개소, 유지1개소) ▶ 불인정 등 : 0개소 ▶ 인정유지 결정 등 : 1개소			
■ 심사내용 및 결과 ○ 위험성평가 인정 결정(25개소) - 인정 결정 : 심사 대상 30개소 중 0000000 등 25개소에 대하여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기준에 의거 인정 결정함. (종합점수 70점 이상) ※ 산재예방요율제 적용 : 0000000 등 21개소는 2024년부터 산재보험료 20% 감면될 예정 ※ 인정사업장 중 건설업, 도·소매, 시설관리업 등 4개소는 요율제 적용 제외됨. ※ 산재예방요율제 적용대상*은 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고시하는 사업종류 중 제조업, 임업,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으로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사업장 적용 * 근거 : 산재예방요율제 운영에 관한규정 제3조(산재예방요율제 적용대상) ○ 위험성평가 취소 결정(4개소) - 인정취소 결정 : 000 등 4개소에 대하여 위험성평가 사후심사 결과 인정 기준을 미충족하여 취소 결정함. * 근거 : 위험성평가 인정업무 처리규칙 제9조 (사후심사) ○ 위험성평가 인정 유지 결정(1개소) - 0000000000은 직·간접적인 법령위반으로 재해가 발생했다고 볼수 없어 인정유지 결정함. * 근거 : 사업장 위험성평가에관한지침 제22조 (인정의 취소)				
■ 심사결과 공개여부	☐ 공개			
	☒ 부분공개 (사유 및 공개 내용 : 사업장 정보 등 비공개 정보 삭제 후 최종 심사 결과만 공개)			
	☐ 비공개 (사유 :)			
■ 심사위원 서명				
성 명	서 명	찬반(○,×)	심사 제외 대상	제외 사유
윤기한				
배광호				
이상영				
유병철				
신정학				

※ 심사 제외 대상은 심사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컨설팅·현장심사를 직접 수행한 사업장을 말함
 ※ 위험성평가 인정심사결과서 등 관련서류는 별도 첨부